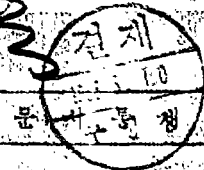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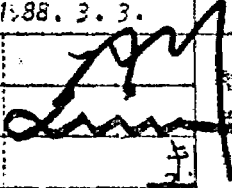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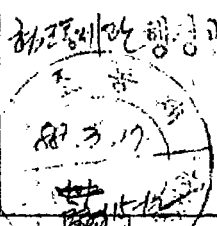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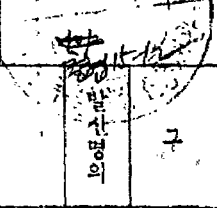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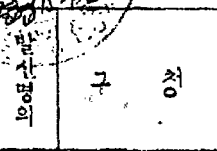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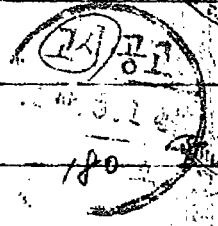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청 30310-5466 (전화: 923-7415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	구청장	서울특별시청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	전결	
시행일자	1988. 3. 3.		
부조정 조각 과장			
기안책임자	도시정비과장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	
제목	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		
제 1 안			
수신 : 내부검정			
제목 : 갈문간			
1. 서선 30310-74(88.2.19) 호와 관련입니다.			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124호(88.2.19)로 시설결정된 상북구			
돈암동 485의 18 - 512의 36간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밭안과			
같이 지적승인으로 자 합니다.			
제 2 안 (도시안)			
고 시			

원본은 도시계획과에 보관함
 이부본은 도시계획과에 보관함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24호(88. 2. 19)로 시설결정된 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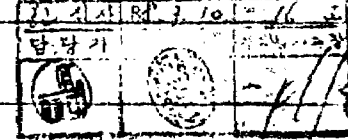
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
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등의 규정

의 일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부도서는 상북구청 도시경미과와 시민봉사실이 비치하여

부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

1988. 3.
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구분	폭(m)	연장(m)	기점	종점	비고
1	1	소로	3	90	돈암485-18	돈암512-36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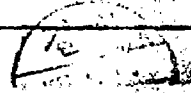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도면 : 상북구청

이치도면과 같음(도면상략).

제3안

수신 : 서울특별시

참조 : 시민과장



<p>제목 : 고시번호부여 및 시장직인납인 요청</p>	
<p>1. 우탁구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</p>	
<p>적극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번호 부여 및 시장직인 납인 요청합니다.</p>	
<p>가. 고시번호 부여건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적극승인</p>	
<p>나. 직인납인 요청건명 : 관보 게재 의뢰문(송부처장관)</p>	
<p>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.</p>	
<p>제 4 안</p>	
수신 : 송부처장관	발신 : 서울특별시
참조 : 법무담당관	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	
<p>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
<p>가. 관보 게재 구분 : 고 시</p>	
<p>나. 관보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적극승인</p>	
<p>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3조 4항</p>	
<p>첨부 : 고시문 사본 3부.</p>	
<p>제 5 안</p>	
수신 : 서울특별시	
참조 : 시설계획과장	

제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결과보고

1. 시설 30316- 74(88. 2. 19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124호(88. 2. 19) 로 시설결정된 성북구

돈암동 485의 18 - 돈암동 512의 36간 도시계획시설(도로) 에 대하여

별첨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

2. 지적승인 도면 각 1부.

제 6 안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사항 통보

1. 시북삼입 30303- 1773(87. 11. 25) 및, 보목 30500- 637(87.

7. 3) 호와 관련임.

2. 우리구 관내 돈암동 485의 18 - 돈암동 512의 36간 도시계획

시설(도로)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24호(88. 2. 19) 및 서울특별

시 고시 제 호(88.3.) 로 결정및 지적승인되었기 통보하니

업무에 참고하고 삼선2동장은 관계주민에게 홍보할것.

첨부 : 1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및 지적승인 고시문사본 각 1부

2. 1/ 3000 위치도 1부. 답.

수신처 : 토목과장, 세무1과장, 삼선2동장.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24호(88. 2. 19)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제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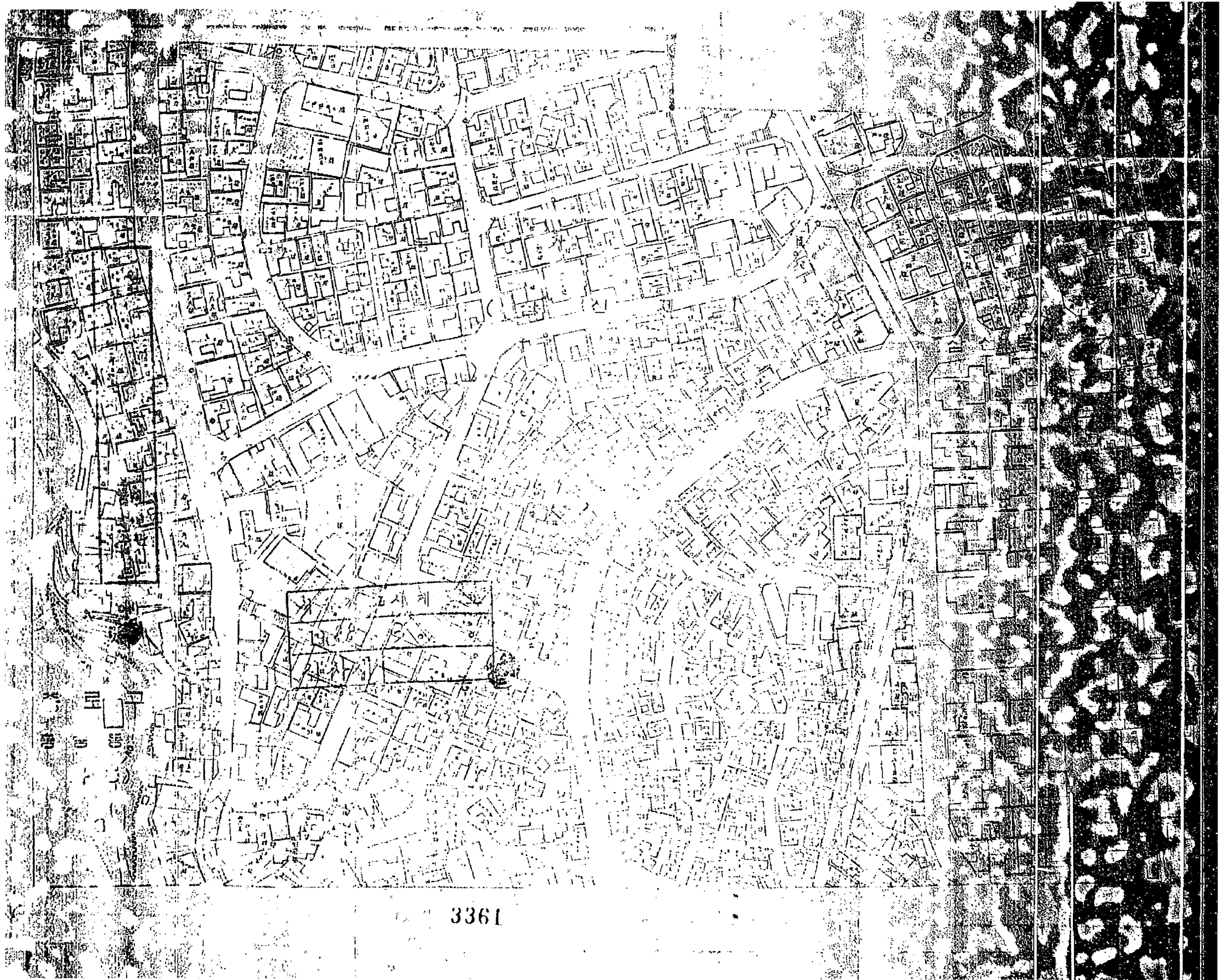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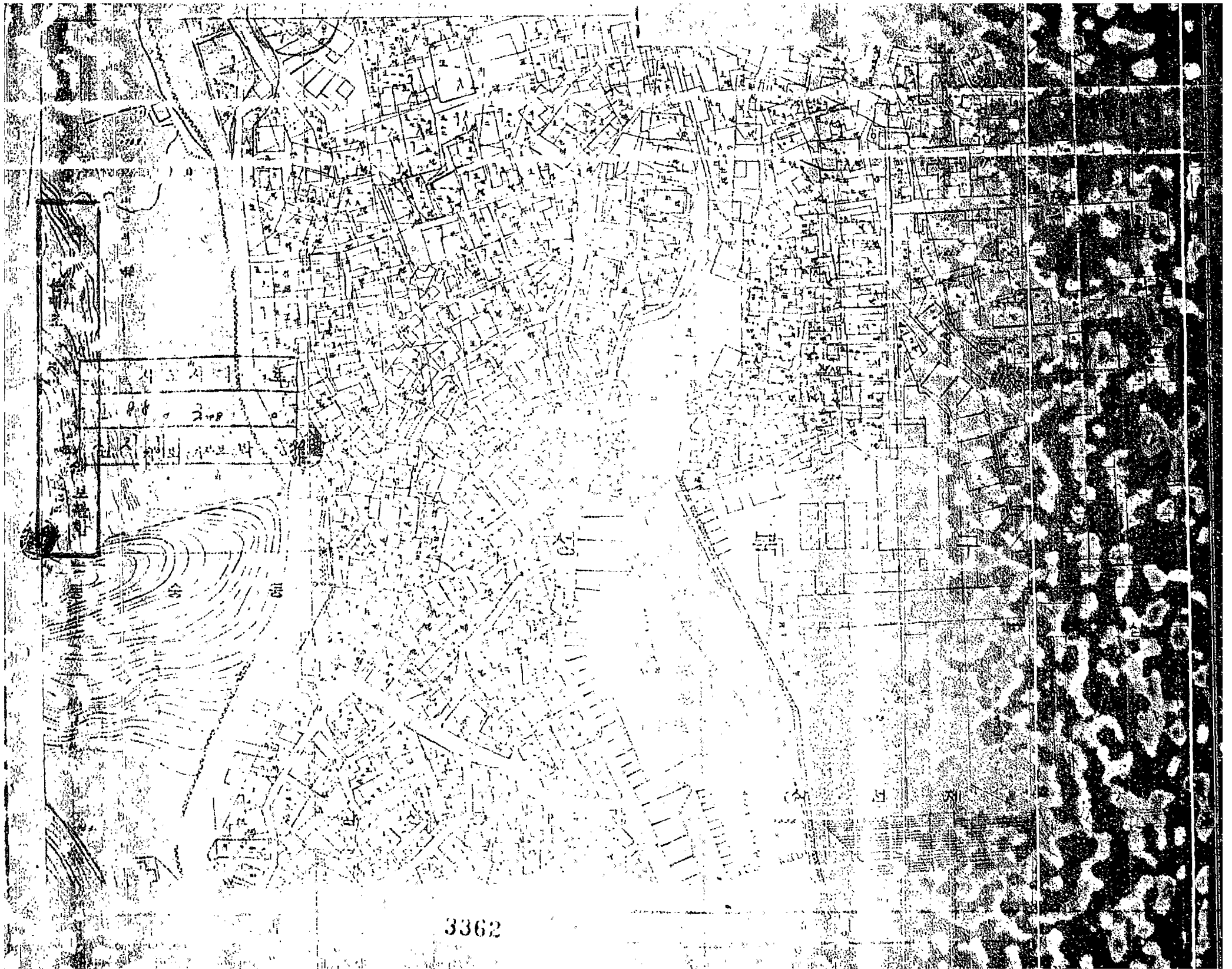
원본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에 보관함

구분	등급	구분	폭(m)	연장(m)	기정	종점	비고
신설	소로	3	6	20	돈암485-18	돈암512-36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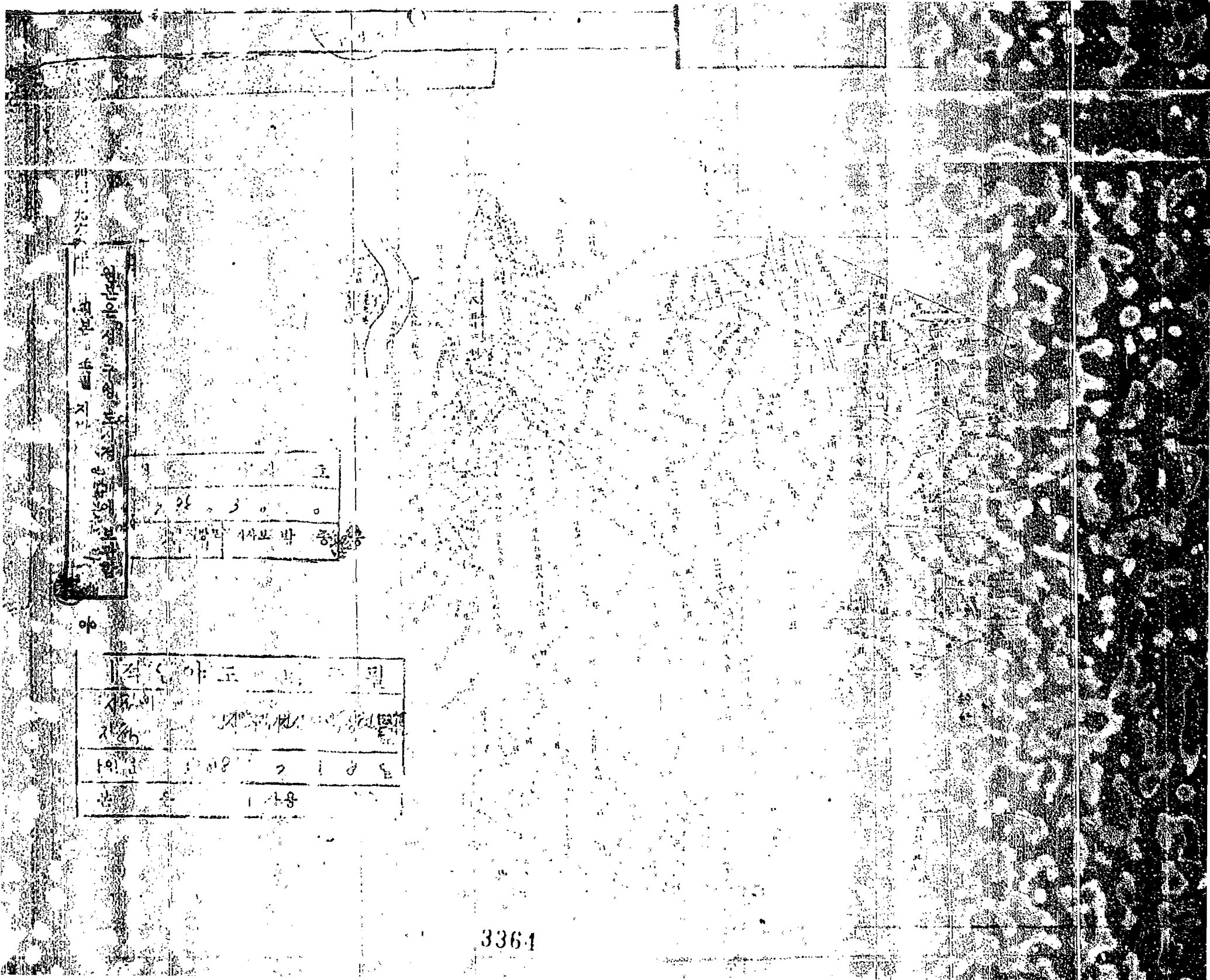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도면 : 성북구청 비치도면과 같음(도면상략) 같.



3361



3362



九方

九方

九方

九方	九方
九方	九方
九方	九方
九方	九方

아

九方	九方	九方	九方
九方	九方	九方	九方
九方	九方	九方	九方
九方	九方	九方	九方